**표준 거래 기본 계약서**

y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구매 및 공급을 위한 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절 총 칙**

**제 1 조****【 기본원칙 】**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이 기본 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물품 구매 및 납품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 (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 계약의 내용 】**

1. 개별계약에는 발주 연월일, 발주 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 조【 개별 계약의 성립 】**

1. 개별 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은 수락 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 .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 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품 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

1.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 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행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갑"과 "을"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어느 쪽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사양 등의 지정 】**

1. "을"은 "갑"의 설계 또는 "갑"이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 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 "갑"에게 납품한다.
2. "을"은 제1항의 설계 또는 규격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설계, 사양 및 제작 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구형 제품의 사후 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도면, 규격서, 사양 서류의 관리 】**

1. "갑"은 발주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면, 규격서, 제품의 사양에 관련한 서류를 "을"에게 대여한다.
2. "을"은 "갑"에게 서 대여한 도면, 규격서, 사양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게서 대여한 도면, 규격, 사양 서류를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 교환을 받는다.

**제 8 조【 발 주 】**

1. "갑"은 "을"에 대하여 개별 계약에 관한 발주에 있어 "을"이 계약 품목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2. "갑"은 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2 절 재료 등의 지급 및 대여**

**제 9 조【 사급재 등의 지급 】**

* 1. "갑"은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 (이하 "사급재" 라 한다)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사급재에 대한 유상, 무상의 구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유상 사급재의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전액 단가에 반영한다.
  3. 사급재의 지급 일시, 장소, 대금지불방법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을"은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급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지시에 의거 사급재의 공급 업자로부터 직접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히 제4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을"은 무상사급재의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처리에 비용이 따를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치한다.
  7. "을"은 "갑"의 사급재에 가공 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사급재로 인하여 발주 품목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 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8. "을"이 제4항 및 제5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재의 하자 및 수량 부족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급재의 소유권 】**

무상 사급재 및 이것으로 제작한 제품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고 유상사급재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완제했을 때 "갑"으로부터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설비, 계측기기등의 양도 또는 대여 】**

1. "갑"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및 검사 시험을 위한 계측기, 게이지, 공구 류 (이하 설비, 계측기 등이라 한다)등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설비, 계측기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을"은 대여 받은 설비, 계측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설비, 계측기 등의 대여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설비, 계측기 등의 양도 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사급재 및 설비 계측기 등의 관리 】**

1. "을"은 "갑"의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설비, 계측기 등을 소정 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을"은 사급재 중 특히 무상 사급재, 대금완제전에 양도받은 설비 계측기 등을 "을"의 자산과 장부 및 보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 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 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완제 전의 사급, 재양도 또는 대여 받은 설비 계측기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을"은 사급재, 금형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갑"이 발주한 품목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급재, 설비, 계측기 등의 처리는 사후에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을"은 설비, 계측기 등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을 한다.
7. "갑"은 "을"의 설비, 계측기의 점검 및 교정 의뢰 시 적극 협조한다.

**제 3 절 납 품**

**제13조【 단 가 】**

1.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 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개별 계약 체결 시 정한다.
2. 단가 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 단가를 적용하며,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 결정시 정산한다.

**제14조【 납 기 】**

납기란 개별 계약에 의하여 발주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 계약 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납 품 】**

1. "을"은 발주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 절차에 따라 "갑"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 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을"은 제2항의 이상 납품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납품 기일이 연기되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 배상 방법은 상호간 협의에 의한다

**제16조【 수송방법 】**

"을"이 발주품의 운송 업무를 이행을 위하여 제3자와 수송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7조【 포장방법 】**

"갑"과 "을"은 납입 물품의 포장 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방법 사용에 노력하여야 하며, 포장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제 4 절 시험 및 검사**

**제18조【 시험검사 】**

1. "갑" 또는 "을"은 협의하여 발주품의 발주 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 검사를 한다.
2. "을"은 "갑"이 시험검사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3. "갑"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발주품의 불량을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4. "갑"은 특히 지정한 검사 공정의 시험, 검사에 "갑"이 인정한 검사원을 종사 시킬 수 있다.

**제19조【 수령, 검사 및 인수 】**

1. "갑"은 "을"이 발주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후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발주품에 대한 납품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납품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갑"은 검사 전의 발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 납품의 처리 】**

1. "을"은 제15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 부족 및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제1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 납품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 상 지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받아 들 일수 있다.

단, 초도품, 샘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

1. "갑"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보관하는 동안 보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갑"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을"은 불합격품, 과납품을 "갑"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 없이 "갑"의 관련 업소에 판매함으로서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 발주품의 소유 이전 】**

발주품의 소유권은 "갑"의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절 지 불**

**제22조【 대금지급 】**

1. “갑”은 물품 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

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갑”과 “을”이 협의한 기한으로 정한 날에 “을”

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1. “갑”이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금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익일부터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대금지급방법 】**

1.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매월 말일 기준이며, 익월 30일 이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하지 않은 물품 대금을 수령하지 않으며 “을”의 직원을 통한 직접 현금 수령도 하지 않는다.

**제24조【 대금의 상계 】**

1. "갑"은 "을"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대금 및 기타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계는 상계할 때마다 수령증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갑"이 그 명세를 "을" 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6절 보 증**

**제25조【 품질보증 】**

1. "을"은 발주품에 대해 제6조의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에 일치시키고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7 절 일반사항**

**제26조【 기밀의 유지 】**

1.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락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 권리의 양도 】**

"갑"과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락을 받지 않는 한 본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28조【 계약의 해제, 해지 】**

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부수 협정과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갑" 또는 "을"이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 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 기본계약 및 부수 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5)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그 부수 협정과 개별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갑" 또는 "을"이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부수 협정과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갑"이 발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을"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이 계약 및 부수 협정에 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갑" 또는 "을"은 제1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때는 피해 제자가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재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4.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또는 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거래 정지의 예고 】**

제28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 기간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계약의 해제, 해지 후의 조치 】**

1. "갑" 또는 "을"은 제28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 서류, 대여품 및 무상 사급재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 으로부터의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 계측기기 등과 발주품의 재고 및 유상사급재를 제3자에 우선하여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사급재는 지급 가격을 발주품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금형 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 손해배상청구 】**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2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1.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그 부수 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중재법 및 상사 중재 규칙에 의한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도 한다.

**제33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2. 제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 시 존속하는 개별 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 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 특약 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 사항과 특약 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 일자 : 20 년 월 일

|  |  |  |
| --- | --- | --- |
| (갑) | 주 소 :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 ○ ○ (인) |
| 연 락 처 : |  |
|  | | |
|  | | |
| (을) | 주 소 :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 ○ ○ (인) |
| 연 락 처 : |  |